

문서번호	환경과-5794
결재일자	2016.3.4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
주무관	수질관리팀장	환경과장	복지환경국장
양영임	이득현	신재익	03/04 오정식
협 조			

2016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·관리 계획



복 지 환 경 국  
( 환 경 과 )

# 2016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·관리 계획

자율점검업소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정한 사업장으로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 증진 및 배출업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·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## □ 개 요

○ 관련근거 :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  
(환경부훈령 제1155호, 2015. 6. 1.)

○ 분야별·등급별 현황

(2016. 1. 1. 기준)

분야별	등급별 현황				자율점검업소 현황		
	계	우수관리	일반관리	중점관리	대 상	기지정	미지정
계	142	135	6	1	135	81	54
수 질	46	41	5	0	41	26	15
대 기	3	1	1	1	1	0	1
공 통 (수질+대기)	6	6	0	0	6	4	2
기타수질	87	87	0	0	87	51	36

○ 자율점검업소 지정 요건

- 공통요건 : 우수관리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
- 분야별 세부지정 요건 : 붙임1 참조

## □ 자율점검업소 지정계획

-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: 66.6%(대상 135, 기 지정 81, 미지정 54)
- 금년도 지정대상
  - 신 규 : 54개소(수질 15, 대기 1, 공통 2, 기타수질 36)
  - 재지정 : 11개소(수질 9, 공통 2)
- 지정절차

지정신청	검토, 지정	사업자이행사항
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구청에 자율적으로 신청 (구청:안내공문 발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신청서류 검토(30일)</li> <li>□ 사업장 단위로 지정 ⇒ 지정서 교부</li> <li>□ 지정기간: 3년(재지정 5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환경법령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관리</li> <li>□ 년1회 이상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: 매년 7월말까지</li> <li>- 하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: 매년 1월말까지</li> </ul> </li> </ul>

- 사후관리
  - 지정취소 : 부정하게 지정, 환경관련 법령위반, 이전, 오염사고발생, 폐업,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
  -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·점검 면제  
(단, 20%선정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)

## □ 행정사항

- 자율점검업소의 지정·재지정 홍보(2회/년)
- 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분석평가(7월)

- 붙임 1. 분야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요건 1부.  
2.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 1부. 끝.